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권한(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과징금 감경상한을 상향(50%→70%)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광역 지자체장 위임(안 제19조의3)

- 1)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서는 과금액이 큰 사건의 처리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이에,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권을 광역 지자체장에 위임함

나.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안 [별표 2])

- 1) 범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한 바 있으나, 현행 시행령상의 과징금 감경상한 규정으로 인해 개정 과징금 고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 존재
- 2) 이에,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을 상향(50%→70%)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권한의 위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

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해당 공급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50”을 “7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건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3(권한의 위임) ① 공정 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 한을 해당 공급업자의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u> <u>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 에는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에 보고해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연 락 처	(044) 200 - 4960